

공매부동산 매매계약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44가길 10 씨제이이태원빌라 6개호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44가길 8 씨제이이태원빌라 6개호]

매도인(甲)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매수인(乙)

공매부동산 매매계약서

본 공매부동산은 2024년 12월 05일 온비드, 우리자산신탁(주) 홈페이지 공매공고에 따라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 우리자산신탁(주)(이하“甲”이라 함)과 매수인 (이하“乙”이라 함)는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 부동산의 표시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44가길 10 씨제이이태원빌라		
대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31-30 대 149㎡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32-4 대 92㎡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32-5 대 106㎡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32-8 대 254㎡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33-5 대 142㎡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건물의번호		구조	면적	대지권의 비율
층	호			
1	101		149.82㎡	743분의 120.8
1	102		165.80㎡	743분의 133.69
2	201		149.82㎡	743분의 120.8
2	202		165.80㎡	743분의 133.69
3	301		142.28㎡	743분의 114.71
3	302		147.98㎡	743분의 119.31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44가길 8 씨제이이태원빌라		
대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33-4 대 255㎡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33-1 대 66㎡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33-3 대 99㎡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34-2 대 330㎡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33-2 도로 10㎡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건물의번호		구조	면적	대지권의 비율
층	호			
1	101		183.77㎡	760분의 135.33
1	102		172.08㎡	760분의 126.72
2	201		183.77㎡	760분의 135.32
2	202		172.08㎡	760분의 126.72
3	301		172.83㎡	760분의 127.27
3	302		147.54㎡	760분의 108.64

제1조 (매매대금) 甲은 위 표시 부동산을 일금 원정(W ,VAT포함)에 乙에게 매도한다. (단위: 원)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계 (매매금액)
대지가격	건물가격	소 계		

제2조 (계약금) 乙은 계약금으로 일금 원정(W -)을 甲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대금지급 방법 등)

①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

구 분	공급가격	지급일자
계약금		
잔 금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합 계		VAT포함

② 乙이 제1항에서 정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예금이자 포함)은 甲에게 귀속한다.

③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장소는 반드시 아래 지정계좌에 현금으로 송금하기로 한다.

[지정계좌 : 우리은행 0000-000-0000 예금주: 우리자산신탁(주)]

제4조 (소유권 이전)

① 乙이 제1조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乙은 甲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즉각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권리제한사항 등)은 乙이 부담한다.

② 소유권 이전절차에 관한 등록세, 인지대 등 일체의 비용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

③ 입찰일 기준으로 입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까지 공매부동산의 제한권리는 乙의 책임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이를 말소하지 못하는 경우 乙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④ 공매부동산 소유권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乙의 책임으로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하자 담보책임 및 위험부담)

① 乙은 매매목적물의 권리와 현 상태 및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 검토한 후 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 甲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공부 및 지적상의 흠결이나 환지로 인한 감평, 미등기 건물, 행정상의 규제 등으로 인한 구조, 수량의 차이
 2.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므로 인하여 받는 권리의 제한
 3. 등기부상 표시내용과 현상의 차이
 4. 기타 제3자의 권리
- ② 이 계약체결일 이후에 매매목적물의 공용징수, 도시계획의 변경, 건축제한, 도로 편입 등 일체의 공법상의 부담이 부과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乙의 부담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乙은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甲에게 묻지 않는다.
- ④ 소유권이전시까지 공매물건에 대한 제한권리(근저당, 가처분, 전세권, 지상권, 가압류, 압류, 유치권등)의 말소 등 모든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는 乙이 인지하고, 매매계약서상 乙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乙은 이를 이유로 일체의 이의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명도 또는 인도책임)

- ① 명도 또는 인도 책임은 乙이 부담하기로 한다.
- ② 乙은 제1항의 명도 및 인도책임조건에 대하여 甲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③ 공매부동산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건물, 공작물 및 동산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물건 또는 변경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명도, 철거, 수거, 인도 책임 및 비용부담은 乙이 한다.
- ④ 본 계약체결 이후 매매 목적물과 관련하여 기존 이해관계자들과의 분쟁 및 민원사항 등은 乙의 책임으로 해결토록 하여야 하며, 그 정리결과를 이유로 甲에게 어떠한 권리주장이나 요구(대금지급의 조정 등)를 할 수 없다.

제7조 (제세금 등) 본 계약의 목적부동산에 매매계약일과 상관없이 전유 및 공용 부분을 막론하고 기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수 있는 일체의 비용(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각종 부담금 등 제세 공과금)은 소유권이전과 관계없이 乙이 부담하기로 한다. 단, 법률에 의거 甲을 납부의무자로 하는 세금 중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잔금납부일을 기준으로 이전은 甲, 이후는 乙이 부담한다. 또한 잔금납부일 기준으로 甲을 납부의무자로 하는 세금이 부과 전인 경우에는 乙은 甲에게 과세관청에서 확인한 예상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 ① 甲 또는 乙이 매매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甲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공매공고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
- ③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가압류,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등)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고 甲이 판단하는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甲은 乙이 기 납부한 매매대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

며 이에 대하여 乙은 甲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본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甲의 위약으로 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甲은 지급받은 매매대금(이자없이 원금)만을 乙에게 반환하고 乙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甲에게 귀속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계약의 해제(무효)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변경사항의 신고) 乙은 이 계약 체결 이후 乙의 상호 및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甲에게 신고하기로 한다. 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乙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乙은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책임지고 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불성실신고에 따른 과태료처분 등 모든 책임은 乙이 지기로 한다.

제11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부동산의 甲을 채무자(또는 제3채무자)로 하는 권리제한사항(가압류, 가처분, 압류등)이 발생시에는 乙이 책임지고 처리기로 한다.

③ 입찰참가자준수규칙, 공매공고 내용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

④ 甲, 乙 쌍방 간에 분쟁 발생 시 부산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2조 (임대차 등권리제한사항의 부담)

① 공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전입세대열람(2024.12.02.기준) 결과, 신탁등기 전·후에 아래와 같이 전입 및 임대되어 있으며, 우리자산신탁(주)에서 신탁등기 이후 임대차동의한 건은 없으나, 신탁등기 이후로 우리자산신탁(주)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임대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완전히 표시하는 수단이 아닌 참고사항일 뿐 실제상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입찰자(낙찰자,매수인)가 공매응찰(매매계약) 전에 직접 입찰자(낙찰자,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실제 임대차 권리관계를 관할주민센터(세무서) 전입세대열람(등록사항 열람) 및 탐방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전 조사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무를 판별해야 하고 이에 대한 판단 및 확인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아 래 -

■ 전입세대 현황

소재지	호수	전입자	신탁등기일	전입일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44가길 10 씨제이이태원빌라	202호	정*근	2022.05.04.	2024.03.12
		김*열		2024.04.09.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44가길 8 씨제이이태원빌라	102호	송*순		2009.07.30.
	202호	김*희		2021.06.04.
		이*윤		2024.09.04.
	302호	강*****민		2022.11.23.

- ② 명도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임대차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하여)책임지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은 공매부동산을 현존상태로 매수하기로 하며, 목적물을 직접 확인 후 입찰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매부동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그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임차인이 매도인(당사)에게 청구하는 경우 포함, 그 임대차보증금과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그 지급을 전적으로 매수인이 책임지고 당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 ③ **공매목적 부동산에 아래 표와 같이 재산압류 권리제한사항이 결정(2024.12.03.기준)된바, 공매목적 부동산이 관련법에 의거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권리제한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일체는 입찰자(낙찰자,매수인)가 입찰자(낙찰자,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담합니다.(단, 공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당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인 경우에는 공매처분대금으로 해당 압류사건을 정산합니다)**

- 아 래 -

■ 권리제한사항

소재지	호수	접수정보	주요등기사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44가길 10 씨제이이태원빌라	202호	2024년9월12일 제118618호	권리자 국
	301호	2024년9월12일 제118618호	권리자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44가길 8 씨제이이태원빌라	101호	2024년9월12일 제118618호	권리자 국
	102호	2024년9월12일 제118618호	권리자 국
	202호	2024년9월12일 제118618호	권리자 국
	302호	2024년9월12일 제118618호	권리자 국

- ④ 공매목적 부동산에 근저당권, 전세권, 점유권, 임차권, 유치권, 영업권, 사용권 등 일체의 권리제한사항이 있더라도 권리제한사항 해결 및 소멸에 필요한 일체의 책임 및 비용은 입찰자(낙찰자,매수인) 부담으로 합니다.
- ⑤ 위 ①항 내지 ④항의 권리제한사항을 입찰자(낙찰자,매수인)는 충분히 인지하고 응찰(매매계약)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제한사항으로 인하여 입찰자(낙찰자,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입찰자(낙찰자,매수인)는 우리자산신탁(주)에 공매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해제, 취소, 무효(이하 용어불문) 및 매매대금의 감액요구, 매매대금 납부 기한의 연장 등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및 민원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매수인은 본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확인함
매수인 _____ (인)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

[관련 법 조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 ① 본 수의계약에 따른 매수자(대리인 포함, 이하 같음)의 개인정보는 공매 및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목적 물의 원만한 소유권이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당사에 제공 되었는데, 매수자는 당사가 공매 및 매매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상의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② 당사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 연락처 등이며 공매 및 매매계약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사에 의하여 수집·관리되며 공매 및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 후 10년까지 처리되는 것에 대하여 매수자는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③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는 공매 및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 사항으로 이에 동의하여야만 입찰 및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입찰 및 매매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상기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매수인 _____ (인)

2024. . .

매도인(甲)

상 호 : 우리자산신탁(주)
법인등록번호 : 110111 - 2003236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대 표 자 : 이 종 근(지배인 : 김해진) (인)

매수인(乙)

생 년 월 일 :
주 소 :
성 명 :